

제82차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의결사항

심의일자 : 2017. 8. 14.(서면심의)

□ 안건명 : 창덕궁 앞 도심한복판 주요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위 안건에 대한 제82차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 아래 주요 심의내용 및 별첨 위원별 심의의견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건부채택」 의결함

【주요 심의내용】

- 공사중 환경영향 저감시설(세륜세차시설, 폐수처리시설, 이동식 화장실, 가설방진망, 침사지, 가설방음벽, 건설페기물처리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할 것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기본계획에 따른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가이드라인 준수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반영여부를 확인할 것
- 교통량 조사 및 교통시설조사에 다음 조사내용을 포함할 것
 - 교통량 조사는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고 오전·오후 첨두시와 비첨두시로 나누어 조사할 것
 - 보행량 조사를 추가하되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여 조사할 것
 - 각 구간별로 교통시설 및 노상적치물 조사를 실시하여 차로폭원 및 유효보도 폭원을 조사할 것
 - 조사대상 지역을 블록별로 구분하여 주차 실태를 조사할 것
- 환경영향 검토에 “도심 역사고궁 방문객을 위한 하절기 도시 열섬화 저감을 위한 포장공법 제시 및 전·후 효과 예측 분석”을 추가할 것
-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 되도록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DFS, Design For Safety)” 내용을 추가할 것

첨부 : 위원별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각 1부. 끝.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창덕궁 앞 도심한복판 주요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분야	검토의견	비고
토목시공	<p>○주민설명회</p> <p>주변 주택 및 건물등과의 조화 및 사용시 불편이 없도록 관계 주민으로 구성된 설계참여단의 의견을 가급적 반영하여 최종설계를 진행한다.</p> <p>○품질관리</p> <p>공사예산 내역서에는 품질관리를 위한 공종별 품질시험비(예시 슬럼프시험 00회외 시험항목별 시험횟수와 시험단가)와 품질관리비(예시 품질관리자 인건비, 교육훈련비, 품질검사비, 품질시험 차량비등)를 정확한 근거에 의해 산출하여 설계에 반영한다.</p> <p>○공사중 환경관리</p> <p>공사중 환경영향 저감시설(세륜세차시설, 폐수처리시설, 이동식 화장실, 가설방진망, 침사지, 가설방음벽, 건설폐기물처리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p> <p>○성과품 작성 및 납품</p> <p>(1)시방서, 보고서 및 설계 도면간 상이한 부분이 없도록하며 수량산출서와 설계내역서가 일치도록 한다.</p> <p>(2)[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및 3조에 명시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와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를 분명히 작성하여 성과품으로 납품한다.</p>	
종합의견	위 내용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채택합니다.	

2017년 8월 2일

심의위원 : 이 성 원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창덕궁 앞 도심한복판 주요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토목구조	<p>1.“본 과업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u>용역인</u>을 계약상대자라 한다.“에서 용역인을 <u>수급인</u>으로 수정.(P.4)</p> <p>2. "(2)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작성하여 제출한 <u>참여건설기술자의 투입계획</u>"에서 참여건설기술자를 <u>참여기술자</u>로 수정(P.7)</p> <p>3. "(15) 발주기관은 <u>건설사업관리</u> 대상 설계용역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에서 건설사업관리를 <u>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u>를 추가하여 명시하기 바람.(P.16)</p> <p>4. 제4장 기본설계 1.일반사항에서 (9), (11)이 동일내용이므로 (11)항 삭제 (P.24)</p> <p>5. 제6장 성과품납품 2. 1) 설계심의용 자료납품에서 기본설계VE 보고서를 추가하고 비고란에 “필요시(100억이상일 경우)”를 추가할 것.(P.44)</p> <p>6. 과업내용서 과업규모에 “낙원상가 하부 공간 개선(천정 : 약 5,960m², 기둥 : 총 57개소, 보도 : 약 2,490m²)”을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부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업무한계가 명확하게 계약상대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 바람. (P.4)</p>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2017년 8월 4 일

심의위원 : 김 태 흥 (서명)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창덕궁 앞 도심한복판 주요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분야	검토의견	비고
	<p>1) 전체적인 CONCEPT이 도시재생 가로활성화라면 “걷기 좋은 곳”, “걸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곳”, “걷는 것이 중심이 되는곳”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용역범위나 방향을 우선순위에 부합하게 정리 할 것.</p> <p>:즉 도보나 건물앞 전면공지에 주차를 불허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p> <p>2) 가로변 패사드 디자인 가이드 라인 제시도 가능하면 가로변 상가의 기존 자연스러움을 유지하고, 기존상권을 회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할 것.</p> <p>3) 쌈지마당, 전통마당외에 가로변 기존 공개공지, 전면공지 등도 계획범위에 포함하여 과거로부터의 연속성, 가로의 장소성을 회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할 것.</p> <p>4) 부서별로 관리주체가 분리되어 있는 가로 시설물, 보도, 도로 경계, 가로등, 토목 등 해당 용역범위는 총괄부서를 지정해서 관리 주체의 분산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것.</p> <p>5)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기본계획에 따른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가이드라인 준수와 체크리스트 를 작성하여 반영여부를 확인할 것.</p>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2017년 8월 1 일

심의위원 : 이 상곤



(서명)

본 검토서는 2017.8.4.(금) 18:00까지 e-mail(hee3408@seoul.go.kr)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창덕궁 앞 도심한복판 주요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분야	검토의견	비고
1. 장소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성 : 궁궐 가로의 내재적 의미- 유니버설 디자인 : 노약자 배려(턱과 경사)- 품격 : 궁궐의 이미지와 연계성	
2. 조사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궁궐 조성 당시 가로수 분석을 통한 반영가능성 분석- 궁궐조성 당시 풍수 및 궁궐 조성 기법인 주례고공기상의 분석을 통한 현대적 반영가능성 분석	
3. 식재 기반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양의 토성과 토심 : 충분한 토심 및 비옥도를 고려배수성 검토	
4. 녹지 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로축 : 1) 중심축 통경축 구축 2) 부축인 종묘축은 경관 및 녹지축 조성- 가로축 : 광화문로 및 파고다공원쪽 미흡 보완 필요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2017년 8월 2일

심의위원 : 김일식

김일식

본 검토서는 2017.8.4.(금) 18:00까지 e-mail(hee3408@seoul.go.kr)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창덕궁 앞 도심한복판 주요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분야	검토의견	비고
	<p>1.11page 中 14. 하도급 사항 (1)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p> <p>2.16page 中 23.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에 (6)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진행할 공정에 따라 정산하고 계약 변경할 수 있다.</p> <p>3. 22page 3. 교통수요예측 및 교통처리계획 내용 추가 6) 창덕궁앞 도성한복판 주요가로 정비. 전 후 보행 이용객의 예측 전망 분석치 제시</p> <p>4. 22~23page 4. 환경영향 검토 내용 추가 3) 도심 역사고궁 방문객을 위한 하절기 도시 열섬화 저감대책을 위한 포장 공법 제시 및 전·후 효과 예측 분석</p>	
종합의견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 중 선택하여 최종의견 제시 ※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5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2017년 8월 1 일

심의위원 : 한상주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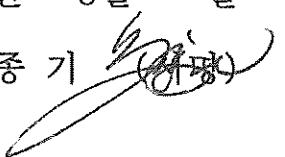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창덕궁 앞 도심한복판 주요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분야	검토의견	비고
교통	<p>1. 교통량 조사 및 교통시설조사에 다음 조사내용 포함 요망</p> <p>(1) 교통량조사는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고 오전, 오후 첨두시와 비첨두시로 나누어 조사하여야 한다.</p> <p>(2) 보행량조사를 추가하여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한다.</p> <p>(3) 각 구간별로 교통시설 및 노상적치물 조사률 실시하여 차로폭원 및 유효보도폭원을 조사하여야 한다.</p> <p>(4) 조사대상지역을 블럭별로 구분하여 주차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p>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2017년 8월 일

심의위원 : 노종기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창덕궁 앞 도심한복판 주요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분야	검토의견	비고
안전관리	<p>1. 구조물 조사(P.20)</p> <p>(1) 항의 내용에서 “과업범위에 설치되어 있는 현존 구조물 현황조사 와 아울러 당해 지역의 자연조건 및 관련시설물 등을 고려한 구조물의 추가, 개량 보완여부와 위치를 조사한다.” 라는 항목에서 현존구조물중 특히, 낙원상가의 경우에는 기존의 점검, 진단등의 자료등을 수집, 분석하여 기 발생되어 있는 손상들을 확인하거나, 기존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금회 과업에서 손상을 조사하여 손상들에 대한 보수 후 하부공간 개선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조사에 따른 용역비용의 증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명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p> <p>2. 의견청취 (P. 21)</p> <p>(1) 항에서 “주민 등 이해당사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기(횟수)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설계사에서 과업수행 수립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p> <p>3. 교통처리계획 수립(P. 31)</p> <p>(1) 장기간 공사로 인해 교통을 통제하여야 할 경우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별도의 교통규제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한 자료작성의 필요성과 추가 용역비용의 증가분에 대해 검토하여 명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p>	
종합의견	상기 의견에 대해서 검토 바라며 이를 고려하여 조건부 채택의견을 제시 합니다.	

2017년 8월 4 일

심의위원 : 정운수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주요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제82차)

분야	검토의견	비고
공통	<p>○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에 아래 법령 조항을 수정할 것(6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법 시행규칙 제23조(별지 25호) → 동법 시행규칙 제27조(별지 제27호) <p>○ 11. 신기술의 도입에 아래 내용으로 추가할 것(10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기술 등 특정공법 적용시에는 자체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법을 선정하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나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기술 등 특정공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목록표 작성과 해당 도면에 공법 명칭을 명기하여야 한다.- 공법 선정시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유사 또는 기존 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때는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발주기관의 자체공법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사유를 시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p>○ 21. 발주기관의 제공자료에 아래 내용을 삭제할 것(13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 <p>○ 22. 작용규정 및 설계기준에 법령명을 정정하고 중복 항목은 삭제할 것(13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4) 지진재해대책법”은 “(4)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수정하고 “(20) 지진재해대책법”은 중복되므로 삭제할 것- 2) 공통분야에서 (16) 서울특별시 투수 블록포장 설계, 시공 및 유지 관리 기준” 및 (17) 서울특별시 지반조사 편람” 항목이 4) 토목분야 (15) 및 (24) 항목과 중복되므로 삭제할 것 <p>○ 제2장 조사업무에서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 조사”내용을 추가할 것(17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항목에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 조사”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 조사내용에 “서울특별시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예정인 각종 공사장과 국토교통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시 시공성 및 경제성을 최대한 높일수 있는 토취장, 골재원 및 사토장을 조사하여 본 사업에 사용 여부를 벌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추가 <p>○ 관련법령을 최신화 할것(18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p>○ 부서명을 현제화 할것(19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정보담당관 → 공간정보담당관 	
토목	<p>○ 2)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아래 내용을 보완할 것(16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DFS, Design For Safe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한다. (2)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기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 (3) 깊은 지하 굴착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4)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제작 자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5) 동일 작업장소에서 시공절차가 충돌되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6)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보수 및 청소를 위한 전용통로, 설비의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한 반입구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7) 부서지기 쉬운 자재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석면 및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해체 및 개·보수 공사 시 기존 구조물이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지반굴착공사의 시공시기가 장마철, 헤빙기와 겹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10) 건설공사 중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부터 24조까지에서 정하는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p>○ “제2장 조사업무 2)측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18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점, 수준, 지형현황측량은 공간정보담당관의 수치지형도 및 인접공사 (율곡로 등) 조사자료 등을 활용할 것 	

	<p>○ 22.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중 2) 공통분야에 아래 사항을 추가할 것(13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 서울특별시 빛 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p>○ 3) 수전지점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29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전시설은 한국전력측과 협의 하여 결정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설계하되 정전시에 대비하여 2계통 수전 또는 비상발전기를 설치하도록 한다. → 수전지점은 부하의 중심부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수전할 수 있도록 하되 한국전력공사측과 협의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설계한다. <p>○ 4) 가로등 설계기준에 아래사항을 추가할 것(29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표준(KS C 8010 도로조명기구)에 따르고, 도로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눈부심 제한, 빛공해 방지, 조명기구 효율, 배광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 조명기구의 설치는 노면의 휙도 분포가 균일하도록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불쾌한 플리커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 분전함에는 분기회로별로 인체감전 보호형 누전차단기(30mA 0.03초)를 계획하고, 기준치 이하의 전압강하와 누전차단기의 오동작이 없도록 설계한다. <p>○ 5) 비상전화 등 통신수단 설치계획 항목을 삭제할 것(30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및 긴급상황 발생시 연락을 위한 비상전화 등 통신수단 설치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설계하여야 한다. → “삭제” <p>○ 7) 급폐기시설 항목을 삭제할 것(30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발전기, 펌프 가동시에 대비하여 급폐기시설을 설치도록 한다. → “삭제” <p>○ ⑥ 전기시설 도면 항목 중 “다” 항을 삭제할 것(39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 변전실, 전기실, 자동제어 평면도, 장비계통도, 전기실 기기 배치 및 전등 전열설비 계획, 전등계획, 소화기 설치계획, 라디오재방송설비, 가로등 상세, 조명기구 등의 상세도를 작성한다. → “삭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⑦ 기계시설 도면 항목을 삭제할 것(3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차도의 장비 일람표, 소화기함 설치평면 및 상세도, 배수배관 평면 및 단면도, 펌프 및 파이프 슬리브 상세도 등을 작성한다. → “삭 제”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기타 설계자문 시에는 서울시 ‘공공조경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할 것(p9) ○ 식재기반설계에 아래내용을 추가할 것(p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반에 수목 등 식재 설계시에는 생육에 필요한 충분한 토심을 확보한다. ○ 7)시설물 설계에 아래내용을 추가할 것(p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경시설 설치시에는 계절별 이용량을 고려하며 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 6) 가로수 식재 설계에 아래내용을 추가할 것(p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량이 많은 구간에는 수목보호덮개나 판목 및 지피류 등 하부식재를 하여 수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 ○ 2) 수목식재에 벽면녹화 내용을 추가할 것(p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관을 저해하는 구조물이 발생 시에는 식재공간을 확보 및 차폐 식재를 검토한다. ○ 수목의 급·관수계획을 설계에 반영하고 병충해 방제 등 유지관리 지침을 마련토록 과업내용에 반영할 것 ○ 1) 기본방향에 아래 내용을 추가할 것(p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방지, 활동성 강화 등 CPTED 적용이 가능한 식재 및 조경시설물 설계를 한다. 	
종합의견	조건부 채택	

2017년 6월 일

심의위원 : 김홍길 (서명)